

정하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(업무)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

□종합의견

○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'99년 7월 15일 서울신용보증조합으로 업무를 개시할 때의 목적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, 영상·패션·소프트웨어 관련기업, 첨단고부가가치산업인 서울형산업 등에게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력 측정자료가 미흡하여 현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상 지원을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채무를 보증·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여 왔으며

○금번 조례개정으로 서울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다만, '99년 말 현재 신용보증계획은 1000억원(1,700건수)으로 계획대비 보증실적비율은 약 32%인 337억 5,600만원(405건수), 2000년 신용보증계획은 1,300억원(1,500건수)으로 2000년 4월 11일 현재 계획대비 보증실적비율 약 17%인 235억 8,500만원(355건수)으로 저조한 신용보증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, 아울러 대출기준과 지원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보다 많은 업체들이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0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65 |
|----------|-----|

2000. 5.
기획경제위원회

- 1. 심사경과
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
 -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4월 24일 상정, 의결)

- 2. 제안설명의 요지
(제안설명 : 산업경제국장 임재오)

가. 제안이유
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용도에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을 추가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□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범위에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추가함.(안 제4조)

※중소기업지원시설 : 중소기업의 창업보육, 시제품·기술·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·운영하는 서울창업보육센터, 서울애니메이션센터, 서울벤처타운 등의 시설

□운전자금의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를 추가함.(안 제8조)

□시설자금의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, 유통업·건설업·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추가함.(안 제12조)

- 다. 참고사항
 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 - ③(생략)

□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□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(2) 입법예고결과(2000.2.25~2000.3.16) 결과, 의견없음.
- (3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중요규제사무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김동수)

- 본 조례안은 '93년 7월 3일 제정되어 '99년 5월 10일 8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, 금번 조례개정은 중소기업육성정책에 맞추어 서울형 신산업·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·지원을 강화하고, 기금의 용자대상 확대 및 용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자금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
- 안 제2조 내지 제4조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범위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추가에 대하여
- 안 제8조 운전자금의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
- 안 제12조 시설자금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, 유통업·건설업·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
- 운전자금지원조건을 연간매출액의 1/4범위내에서 1/2로 완화하고, 용자한도액 또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은 중소기업청의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과 서울시장방침인 200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강화계획을 근거로 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
- 다만,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지원규모를 100억원 이내에서 200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과, 건설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건설장비구입비 또는 임차비 등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, 관광호텔업에 대한 호텔건설 증·개축비를 10억원 이내 개보수비를 5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에

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.

- 마지막으로 200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이 3,000억원(운전자금 1,700억원, 시설자금 1,300억원)으로 2000년 4월 11일 현재 계획대비 승인비율은 13.14%인 394억 1,400만원으로 다소 저조하게 보이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조건 및 기준완화만의 문제가 아니라, 생산성 및 연간매출액이 높은 우량기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담보물(대출시 : 현시가의 약 80% 하는 감평가에 해당은행에서 약 60~70% 하향 적용함)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며, 대출금리 또한 시중은행과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므로,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 보완하여 보다 나은 자금지원 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0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산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66 |
|----------|-----|

2000. 5.
기획경제위원회

- 1. 심 사 경 과
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
 -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4월 24일 상정, 의결)
-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산업경제국장 임재오)
 - 가. 제안이유
최근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수